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2/ 12 통권 171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우리 사회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하여
- 근로 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 올해부터 장애인 식사도움 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 13월의 월급이 짧팔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개정 개요
-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속증여된 주택의 저장설정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거주자와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10% 추가)>

과세표준	세율	비고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매월 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봉사료는 5%)	3%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이자	대부분의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법인이자 포함) 실지명익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소득(차등과세)
배당	대부분의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간 배당소득	25%
	실지명익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사적연금	3~5%
기타	대부분의 일반적 기타소득	20%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 (2억원 이하 20%)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등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4호 / 주간 7호

2025. 2. 12.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10% 추가)	표지
CEO의 경영산책	우리 사회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하여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국민주택채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반려동물 관련 비용 회계처리 & 세무처리 문의 - 유형자산 폐기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근로·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택분할 증여의 다양한 방법 - 해외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액공제	9 10
직장인 Survival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①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746, 2024.06.26) -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기본-2659, 2024.06.10)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세율 도우미 제공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상속증여된 주택의 저당설정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12
세무정보	-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 올해부터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 13월의 월급이 짹짹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 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15 27 30 36
회계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기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기준 적용 지침」 개정 개요 -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37 4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3

우리 사회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하여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우리 사회는 친기업정책(예: 노동시장 유연화, 상속세 개편),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 등 한 개인이나 조직이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통치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형성의 3대 주체

거버넌스 형성의 3대 주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역학간의 관계나 기능의 수행에 의하여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성이 가능하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국제제체 관계 속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영 논리인 관료주의와 관리주의를 어떻게 시장원리나 시민사회의 원리에 맞추어 조정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가 관료주의와 관리주의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관료주의나 관리주의가 시장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면서 삼자간의 결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들이 대륙계 국가 모형들이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Mmarket oriented governance)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강화와 더불어 확산되었다. 경제적인 신자유주의의 글로벌로 확대는 WTO, TR(Technology Round), CR(Competition Round), BR(Blue round), GR(Green round) 등 각종 뉴 라운드¹⁾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개별 국가들은 세계 자본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에 편입되게 되었다. 특히 IMF와 글로벌 투자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도 세계 자본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도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1) 1994년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협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국가는 관료주의나 관리주의를 지향하고, 시장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며,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시장 및 사회간에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다르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는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시장주의(market orientation)는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 배분, 경쟁 원리, 고객주의 등으로 요약된다.²⁾

2) 김석준외 13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23. 2, p46--47.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는 기존 국회를 통한 이익을 조정하는 대리인 체제가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외부 참여(시민들의 참여)와 내부 참여(공무원들의 참여) 모두 중요하며 민주성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시민교육과 행정가의 역할 변화가 요청된다.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은 거버넌스가 속성상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계망의 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특징으로는 개방성, 균등성, 상호 작용성, 공동선 등을 들 수 있다. 즉 문제의 상황이나 맥락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자유로운 입출, 이들 주체들간의 권력과 영향력의 균등성, 주체들간의 상호 작용의 존재, 주체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연결시켜주는 공동선의 보유 등을 기본적 특징으로 한다.³⁾

3) 김석준외(2023), p. 245.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네트워크는 지역성, 학연, 혈연, 직장 근무 등의 연고와 더불어 재력 등이 네트워크 형성의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지극히 폐쇄적이고 불균등적인 것으로 공동선의 추구보다는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 등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거버넌스 형성의 근본적 전제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이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공동체주의의 형성이다. 참여주의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주체로서 참여를 의미한다. 예들 들면 학계나 시민단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기존 거버넌스의 정부하에서는 정부 유도적인 참여가 대부분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주체의 참여가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참여 주체들에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적 선(善)의 형성이 지향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적 선과 가치는 타자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원적 가치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하고 좋은 거버넌스는 선(善)한 정부가 전제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자율적인 교정능력을 보유하는 거버넌스이다. 정부 독점의

거버넌스 하에서 사실상 자율적인 교정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자율적인 교정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되는 것이 거버넌스 내에서의 정부 독점성 완화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정부의 독점성을 억제하고 정부 실패를 교정하고자 고안된 장치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자체는 선(善)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면서 설계된 오랜 전통을 가진 거버넌스이다.⁴⁾

4) 김석준외 (2023)p.244.

건전한 거버넌스는 견제와 균형의 네트워크 속에 있다. 정부의 독점성이 약화된 참여적인 거버넌스에서도 부패는 발생한다. 그러나 부패는 교정의 대상되며, 거버넌스내 견제시스템에 의해 교정된다. 예들 들면, 미국의 정부 윤리법이나 로비 관련법은 공무원 개개인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거버넌스 맥락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고 그 중에서도 신뢰(trust)이다. 신뢰는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자 상호작용을 원활히 해 주는 원활유이다.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면 국민은 정부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행위자들의 정통성을 존중해 주고, 사회이익 조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게 된다.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는 국민은 정부의 이익조정 행위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정부 결정을 수용,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갈등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분출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Q 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1천3백만원어치 매입해야하는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지요?

- 1) 채권을 매입하고 10년 만기뒤에 이자를 받고 매각하는 방안(이자율 1.3%) : 계정과목은 '투자 유가증권'
 - 2)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각해서 매각비용만 부담하여 비용회계처리하는 방안 (비용 1,200,000원 발생) : 계정과목은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
- 1안으로 해도 되고 2안으로 해도 되며, 둘 중에 뭐로 회계처리를 할지는 회사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사항인지요?

A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만기보유할 것인지 즉시 매각할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귀사가 제시한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또한 만기보유 여부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쿠폰 매출 인식 관련하여

Q 저희 회사에서 발행한 쿠폰중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쿠폰을 매출로 인식시킬때 쿠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쿠폰 금액을 그대로 부가세 없이 전체 매출로 인식 시켜야 하는지요?

A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귀속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권 등에 대한 수익인식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폐기

Q 유휴설비 사용이 불가능하여 업체로 고철매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래의 경우 유형자산폐기거래와 고분철매각 거래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처분거래로 보아 고분철매각 거래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유형자산폐기의 경우(별개의 거래로 처리시 두개의 분개발생)

가. 감가상각누계액	980	유형자산	1,000
유형자산폐기손실	20		

나. 미수금	500	잡이익	500
--------	-----	-----	-----

2. 유형자산매각의 경우(하나의 거래로 처리시 하나의 분개 발생)

가. 미수금	500	유형자산매각이익	480
감가상각누계액	980	유형자산	1,000

A 사용이 불가능한 유휴설비를 고철업자에 바로 매각하면서 폐기하는 경우는 2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Q 면세법인입니다(출판사). 상대방은 일반법인입니다. 저희는 항상 책을 판매해와서 면세 계산서만 발행해왔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책을 인용하여 받는 비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

A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를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관련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가 아닌 면세로 하여 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퇴직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제출 등과 같이 사업자로 하여금, 1년간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 말(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함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 등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일종의 과세자료이다.

즉,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자발급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부과 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등이 모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각종 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의 국내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관련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 기한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은 3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

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사업소득 중 봉사료는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그 밖의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가 원칙임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HTS)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매체 제출자 중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자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품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비과세근로소득과 10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등
-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③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 ⑤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주택 분할 증여의 다양한 방법

방법	부모양도세	자녀취득세	자녀증여세	자녀자금부담	총부담세금
부담부증여	2.52억원	7300만원	2.25억원	2.98억원	5.5억원
3억원 저가매매	5.5억원	6600만원	0	7.36억원	6.16억원
8억원 저가매매	5.5억원	6600만원	8000만원	3.46억원	6.96억원
8억원 매매 (비과세)	3800만원	6600만원	8000만원	3.46억원	1.84억원

화 —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간 공제세액	2024년 분	2025년 분
자녀 1명	15만원	25만원
자녀 2명	35만원	55만원
자녀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해외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액공제

미국	일정 한도 소득공제
스페인	재투자 금액 비례 비과세
영국	비과세
프랑스	비과세

취득세 현황

영국	다주택자 최대 15%
싱가포르	다주택자 15%, 외국인 20%, 법인 30%



금융투자소득 적용 시 소득, 자산, 세 부담(연평균)

(단위: 만원, %)

총자산 분위	소득				자산			과세				
	근로 소득	금융 (배당) 소득	금융 투자 소득	소비	총자산	금융 자산	금융 자산/ 총자산	금융 소득 분리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증권 거래세	금융 투자 소득세
									금액	과세자 비율		
1분위	1,147	-2.7	3.1	5.044	-138,086	-174	0.0	0.0	0.0	0.00	0.1	0.6
2분위	1,237	-2.6	3.5	2.996	-64,080	-167	0.0	0.0	0.0	0.00	0.1	0.7
3분위	1,518	-2.5	4.4	2.317	-32,134	-157	0.0	0.0	0.0	0.00	0.2	0.8
4분위	2,491	0.2	8.2	2.103	-690	21	0.0	0.0	0.0	0.00	0.4	1.6
5분위	4,757	13	19.9	2.271	46,392	897	1.9	1.7	0.3	0.00	1.4	3.7
6분위	8,829	43	34.1	2.349	129,924	2,912	2.2	3.5	4.5	0.01	3.1	6.3
7분위	17,819	117	51.2	2,479	295,653	8,034	2.7	5.5	26	0.01	5.5	9.3
8분위	40,095	250	71.8	2,648	671,764	17,326	2.6	7.5	77	0.02	9.4	12.8
9분위	108,128	1,043	24.5	2,696	1,748,700	71,546	4.1	12.5	407	0.03	3.7	4.5
10분위	278,599	4,476	20.8	2,754	4,474,956	235,713	5.3	20.7	1,929	0.06	2.0	3.8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①

중국 북송시대의 정치가로 태종에게 조언을 서슴지 않았던 이항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는 능력과 인품, 이 둘을 함께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능력과 인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품을 갖춘 사람이 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성공한 리더는 능력과 인품을 균형있게 갖추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컨설팅 대표이자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의 저자인 이와타 마쓰오가 들려주는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입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지도자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입니다.

1. 기술이나 능력보다 인품을 더 중요시한다

눈앞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좋은 품성을 키우는 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 물론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도 중요하다. “사람은 좋은데 일에서는 좀 아쉬워”라는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다. 일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기술이나 능력보다는 인품이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업무를 직접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사람을 다루는 데는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인품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은 자신의 행동에서 도덕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신 판례 예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746, 2024.06.26

■ 질 의

- 원리금 균등상환시 매년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 부족분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상속증여된 주택의 저당설정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06, 2024.07.09

■ 질 의

- 질의인은 '21.0월 배우자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전세 세입자 포함, 담보대출 실행하지 않음) -'24.0월 질의인에게 지분 1%를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4.0월 질의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여 담보대출금으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후 해당 아파트로 입주예정임

질의

- 증여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한 경우,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소득법 52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기본-2659, 2024.06.10

■ 질 의

- 질의자 갑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7.8월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8백만원을 납부 고지 받으나, 그 지정납부기한(2017.8.31.)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발생함
- 위 종합소득세 체납 이후 갑이 위 체납세액을 여러 회에 걸쳐 납부하여 2022.1.3. 당초 과세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8백만원을 완납한 결과, 가산금 3백만원(중가산금 포함)만 체납된 상태임
- 2022.2.9.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신청함

질의

-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고지세액만 납부하여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소득-458, 2024.08.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증권 및 유가증권의 투자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3.2.14. 설립되었으며, 출자금 전액은 AAA(이하 "대주")이 출자하였음
 - 질의법인은 '23.00.00.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로부터 000억 원을 차입(이하 "쟁점대여금")하고 아래와 같이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함(이하 "쟁점약정")
 - 약정된 이자지급시기 도래 전인 '24.00.00. 질의법인과 대주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여금 이자 연 4.6%를 무이자로 변경함(이하 "변경약정")

질의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부 조건을 무이자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세율 도우미 제공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 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장외거래 주주 등은 아직 적용대상은 아니다.

세율선택도우미를 이용하면 복잡한 양도세율을 선택해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주요 사항은 개별확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세법개정안 발의... 세무사회 "적극 환영"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지원, 취업자 세금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은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음에도 감면대상 업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열거식으로 특정 업종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종 업종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고,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조세지원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강조하고,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되면 감면 대상 확인에 따른 행정력 및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수) 개통합니다.
-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합니다.

1 빅데이터 분석과 AI상담으로 한단계 더 나아간 연말정산시스템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소득발생 : 2024년 1월~6월) 도움말

전체 < > ☰

관계	성명	소득기준 초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김원천	Y

유의사항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자 입력시 팝업 안내 강화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I 연말정산 안내 팝업(안) I

○ 부양가족 입력

·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기본 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부녀자	원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결혼	자녀(기본)	출산임양
□	소득자 본인	내국인	세	800101-1****03	N	Y	N						
□	소득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선	211109-2****07	Y	Y							
□	직계비속(자녀 및 손)	내국인	부	100101-3****60	N	N	N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님을 기본공제 받는 경우
 안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24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 외) '24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확인

4 AI 상담사가 신속·편리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0번 → 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세무서	▶ 대표번호→2번 → 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4번(AI상담사 연결)

2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제공

- 간소화 서비스는 1.15.(수)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1.17.(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2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 안내

-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합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 1 -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1 개선 전(~2023년 귀속)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 및 간소화자료 모두 제공
 → 소득초과 부양가족(김원천)의 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사례] 김근로 총급여 3천만원, 김원천 연간소득금액 250만원, 김국세 연간소득금액 없음

1 부양가족 명단 모두 제공 후 공제여부 선택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본인	김근로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김원천	540301-2*****	<input type="checkbox"/>
자	김국세	980505-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모두 제공 (예시) 신용카드 내역

사용자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근로	카드 주...	일반	2,656,020
	카드 주...	대중교통	3,700
<input type="checkbox"/> 김원천	카드 주...	일반	2,490,675
	카드 주...	전통시장	5,95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국세	카드 주...	대중교통	159,900
	주식회사 한...	일반	607,260



② 개선 후(2024년 귀속부터)

- '24년 상반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김원천)의 명단 및 간소화자료 미제공으로 과다공제 예방
- [사례] 김근로 상반기 총급여 3천만원, 김원천 상반기 소득금액 250만원, 김국세 상반기 소득금액 없음

①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예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관계	성명	소득기준초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김원천	Y

①-1 부양가족 명세에서 제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본인	김근로	75010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김원천) 명단 제외			
자	김국세	980505-1*****	<input checked=""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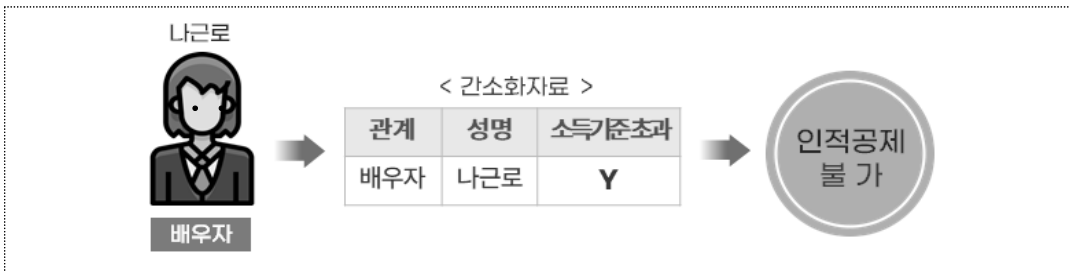
②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원천 차단
(예시) 신용카드 내역

사용자	상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근로	카드 주...	일반	2,656,020
	카드 주...	대중교통	3,700
김원천의 간소화자료 미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국세	카드 주...	대중교통	159,900
	주식회사 한...	일반	607,260

참고 2 -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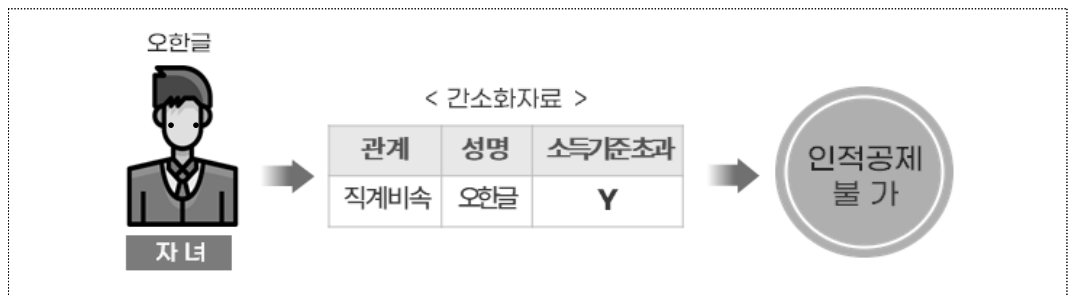
① 국세물산에 근무하는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

- 김원천의 배우자 나근로는 '24.1월 취업, 6월까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함
→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 (200만원×6개월)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②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

- 국세전자에 근무하는 오행정의 자녀 오한글은 올해 1월부터 학습지 강사로 일하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음
→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450만원* (1,800만원-1,800만원×75%)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 상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 1,800만원 (300만원×6개월), 단순경비율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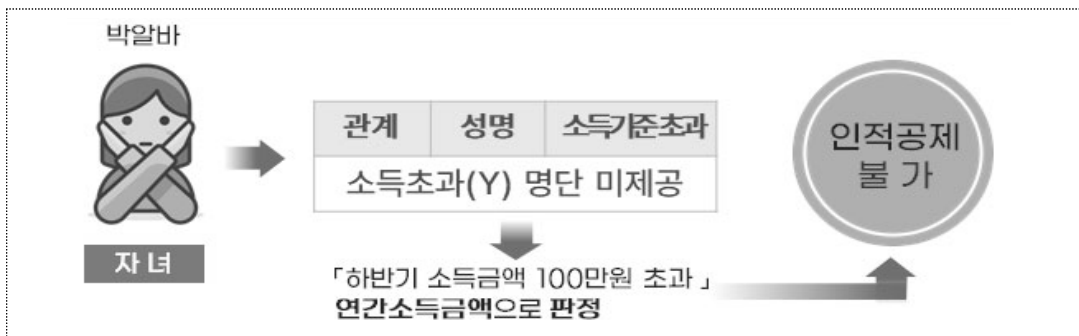
③ 세종세무서에 근무하는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

- 최국세의 아버지 최농부는 '24.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천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함
→ 상반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



④ 정부마트에 근무하는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

- 박성실의 자녀 박알바는 방학기간인 '24.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며 모델료 700만원을 수령함
→ 사업소득금액 379만원* (700만원-700만원×45.9%)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아님
* 하반기 사업소득 총지급액이 700만원, 단순경비율 45.9%
※ 간소화자료는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초과(Y)를 표시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박알바는 소득기준초과(Y)가 표시되지 않음에 주의





참고 3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24년 귀속)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인적 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도서·문화비, 영화관람료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연 금 계 좌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공 제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06년 개통) 8종 → ('19년) 25종 → ('23년) 37종 → ('25년) 42종

참고 4 - 주요 문답자료(FAQ)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 ▶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 ▶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 ▶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합니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 ③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 ④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보며, 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2 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
- ⑤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Q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Q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 ▶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Q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경로〉

[간이 근로·사업·기타소득]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 (모바일)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퇴직소득]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모바일)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양도소득]

- (홈택스)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Q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Q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

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Q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분	내용	일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5.1.7.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5.1.15.~1.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5.1.15.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5.1.15.~1.17.
	최종 확정자료 제공	'25.1.20. 부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자료 제공*	'25.1.17.(또는1.20). 부터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시 선택한 일괄제공 받는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공

Q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Q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경로] 국세청(www.nts.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점자받기
-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¹⁾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²⁾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경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2) 국번 없이 126 → 0번 → 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자주 묻는 질문

1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명서류]

장애인 범위	필요서류	발급처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여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읍·면·동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법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국가보훈처	○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X

2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방법]

구분	보험료 납입 내역	적용 한도	공제금액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	장애인은 전용보험 15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료 2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1명	장애인전용보험료 15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1명	일반보험료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을 하나의 상품에 납입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전용보험 중 선택	100만원

3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교육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자, '07.1.1.이후 출생자)

-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6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이 짹짹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 [자주묻는 질문①~⑦]

- 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님
- ②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 아님
- ③ 주택('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입니다.
 -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부담부 증여는 가능)
- ④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됩니다.
 -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 추가
- 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 적용
- ⑥ 대출약정보다 중요한 것?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완료!
 -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
- ⑦ '12.1.1.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세요.
 -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¹⁾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²⁾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경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2) 국번 없이 126 → 0번 → 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자주 묻는 질문

1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

3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3 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소법 §52㉔)

-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4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②와 같이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는 '23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



-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24.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받았습니다.
 * '24.10~'25.9월 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 '25.10~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 상환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천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text{기준금액} = \frac{\text{차입금 } 2\text{억원} \times 70\% = 1.4\text{억원}}{\text{상환기간 연수 } 40\text{년}} = 350\text{만원} \quad \rangle \quad 300\text{만원} \quad (\text{'25년 원금상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text{기준금액} = \frac{\text{차입금의 } 100\text{분의 } 70}{\text{상환기간 연수}}$$

6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10.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7 '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12.1.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2.1.1. 이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구 분	상환기간	공제한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대출이 아닌 경우	15년 미만	600만원
	15년 이상 29년 미만	1,000만원
	30년 이상	1,500만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	15년 이상	2,000만원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상환 대출		1,800만원

* '24.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참고 - 주택자금 공제 항목별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52 ④)

-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 (차입금)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 ✓ (공제대상) 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 원 ~ 2천만 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52 ⑤)

-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 (차입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 (공제대상)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계액 (연 최대 3백만원 × 40% = 120만원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95의2)

-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임차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 ✓ (공제대상)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 원 한도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의 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천만원×15% (17%) = 150만원 (17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예: 반전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공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

□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31.까지 제출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4. 8. 20.공포, ’25. 1. 1.시행) 되었습니다.

*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 1. 16.(목)에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개정 개요

- 금융감독원, 2025. 2

I. 개요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위원장: 전규안, 이하 ‘기준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이하 ‘검토기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이하 ‘적용지침’)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2. 기준위원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 Working Group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에서 작성한 개정 기초안을 검토하였으며, 기준위원회는 동 기초안을 토대로 이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3. 기준위원회는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의 개정을 위해 2024년 11월 26일 개정 공개 초안을 의결·공표하고 2024년 12월1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4. 이 개정 개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의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II. 개정 배경

5. 이번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 개정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및 감사기준서 315의 개정(예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정

6. 금융감독원은 202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이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23년12월). 단, 2024년의 경우, 종전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을 따를 수 있다.

7.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상장법인이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8.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관한 개정을 사전예고하였으며(24년11월), 이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 모범기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 대기업을 경우도 중소기업처럼 보다 유연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모범기준 ‘제5장 부칙’과 동일하게,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준수하는 제도를 갖춘 경우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도록 함

감사기준서 315 개정 예정

9. 기준위원회는 2024년 중 국제감사기준(ISA) 315 (2019 Revised)를 도입하여 감사기준서 315를 개정하고자, 감사기준서 315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24년 11월). 이 개정안은 이후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10. ISA 315 (2019 Revised)는 감사기준서 1100에서 적용되는 개념인, ‘관련경영진 주장’ 및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개념이 도입되었다.

III. 주요 개정 내용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개정 예고안 포함) 반영

11. 용어의 변경: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서 참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용어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 특례'에서의 문구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검토기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 특례'에서 참조하는, '모범규준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다.목' 으로 변경하였고,
- '모범규준 제5장(부칙) 문단 112'를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제4호 라.목' 으로 변경하였음

12. '검토보고서 사례'에서의 문구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보론2 사례에 제시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양식에서의 관련 문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으로 변경하였다.

13. <사례 4> '상장중소기업 또는 비상장대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범위 문단]: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다.목'으로 변경
- [검토결론 문단]: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 및 보고기준'으로 변경

14. <사례 5> '비상장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범위 문단]: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5장 부칙 규정'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라.목'으로 변경
- [검토결론 문단]: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5장 부칙의 규정'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라.목'으로 변경

[참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상 검토보고서 사례 개정 요약]

검토보고서 사례	현행	개정안
사례4 '범위 문단'	...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제2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제4호

	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다.목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사례4 ‘검토결론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u>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u> ’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u>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u> ’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례5 ‘범위 문단’	... 운영실태평가보고는 ‘ <u>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u> ’ 제5장 ‘부칙’과 ‘ <u>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u> ’ 제5장 ‘부칙’규정에 따라 상장중소기업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실태평가보고는 ‘ <u>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u> ’ 제5장 ‘부칙’과 ‘ <u>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u> ’ 제2장 ‘ <u>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u> ’ 제4호 라.목에 따라 상장중소기업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사례5 ‘검토결론문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u>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u> ’ 제5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 <u>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u> ’ 제2장 ‘ <u>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u> ’ 제4호 라.목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5. <사례 5> ‘비상장중소기업’의 검토보고서 ‘검토결론 문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 및 보고기준’이 아닌 ‘평가 및 보고기준 제4호 라.목’을 참조하였다.

- 기존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적용기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시는 상장기업, 상장중소기업(비상장대기업 포함), 비상장중소 기업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음
- 이 중 비상장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예시의 문구는 다른 보고서의 사례와 달리,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

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준수하고 있는 통제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형태임

- 이처럼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실태보고서 형식이, 다른 사례와 확연히 다른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중소기업은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준수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춘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평가 및 보고 기준 개정안의 ‘제4호 라.목’ 조항을 ‘검토보고서’ 결론문단에서 참조하였음

감사기준서 315 개정사항 반영

16. 기준위원회는 ISA 315 (2019 Revised)를 도입하여 감사기준서 315의 개정을 목적으로, 감사기준서 315의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4년 11월), 이 개정안은 이후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검토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more than remote →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으로 변경

17. 개정 감사기준서 315는 감사기준서 1100에만 있던 용어인 ‘관련경영진주장’과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 개념이 적용되었다.
18. 개정 ISA 315는 ‘관련경영진주장’을 ‘식별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는 경영진주장’으로 정의하고 그 기준을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이 있는 경우로 설명하였다.
19.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서는 ‘중요한 취약점’ (material weakness)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발견·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PCAOB AS의 설명에 따라 ‘more than remote’는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20. 기준위원회는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 감사기준서 315에 맞추어 감사기준서 1100의 정의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1. 이에 따라 검토기준에서도 ‘중요한 취약점’의 정의 및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이라는 표현을 모두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경영진주장’ 용어 등도 개정 ISA 315에 맞추어 변경하

였다.

기타사항 반영

22. 기존 검토기준의 아래 문구(문단 11.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기술해야 할 내용’ 中)는 ‘설계/운영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감사인의 검토(인증) 대상으로 비취질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히 수정하였다.

검토기준 문단	현행	개정안
문단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가 평가기준 일 현재 기준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모범규준 등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계·구축·운영되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결론 표명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평가기준 일 현재 기준으로 <u>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u>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u>개념체계</u> 등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u>설계·운영되었는지</u>,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론 표명 <p>...</p>

적용지침 개정

23. 금융감독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정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에서 참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의 시행일

24. 기준위원회는 검토기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검토기준의 개정사항은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및 ② 감사기준서 315 개정안에 따른 사항으로 구분된다.

25. 이중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은 ‘평가 및 보고기준’이 2024년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 역시 2024년부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6. 이에 기준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공개초안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검토기준 개정사항 구분	시행일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2024년
② 감사기준서 315 개정안에 따른 사항	2026년(2025년 조기적용 허용)

27. 즉 검토기준의 개정안을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검토기준 개정안 구분	시행일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부터 적용(다만,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한해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2023년 개정)을 적용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및 ② 감사기준서 315 개정안에 따른 사항 모두 반영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부터 적용(시행일 이전 재무제표감사에 개정 감사기준서 315를 조기적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조기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31일 (금)	2월 3일 (월)	2월 4일 (화)	2월 5일 (수)	2월 6일 (목)
미 달 러 (USD)	1433.30	1453.00	1469.20	1460.80	1450.00
일 본 엔 (JPY)	927.88	935.91	947.96	946.08	950.48
영 국 파 운 드 (GBP)	1779.87	1790.17	1829.37	1822.93	1812.72
캐 나 다 달 러 (CAD)	988.07	987.70	1020.28	1019.58	1012.85
홍 콩 달 러 (HKD)	183.92	186.42	188.53	187.59	186.21
위 안 화 (CNH)	197.26	199.38	199.91	199.73	198.79
유 로 화 (EUR)	1488.84	1491.50	1520.25	1515.80	1508.00
호 주 달 러 (AUD)	899.79	894.54	915.39	913.37	911.25
싱 가 폴 달 러 (SGD)	1059.15	1062.56	1080.93	1079.99	1075.3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6.27	326.15	328.31	328.71	327.87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5. 2

<주요 내용>

- ◆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6건), 검토의견 미표명(4건)
- ◆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 과거 5년('18~'22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약 30건)의 절반 수준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어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I.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념)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

□ (위반시 제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I. 2023 회계연도 점검 결과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회사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조치 결과 회사(600~1,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위반 건수(총 15건)는 감소 추세*이나,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 5년 평균 30건('18년: 28건 → '19년: 41건 → '20년: 56건 → '21년: 10건 → '22년: 14건)

III.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유의사항



① (내부회계 미구축)

비상장법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상장법인이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 *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3)금융회사

위반 사례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1천억원 이상)인 A사는 '22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었으나 '23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 '23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

② (회생절차 신청)

신청 중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습니다

-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반 사례

- B사는 '23년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24년에 회생절차 개시)

③ (내부회계 인력 확충)

내부회계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세요

-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제도의 설계, 실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④ (대표자·감사의 보고)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보고하고 기록하세요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감사인 유의사항

① (감사인 의견 표명)

대상 회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견을 표명하세요

-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감사 또는 검토)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 미구축,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 E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고 회사가 내부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

IV.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①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23.5월)되었으나, 예외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회사, 감사인]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은 '25회계연도로 유예되었음

○ 또한 외부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화(제3조의2)되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2024 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자율규정*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25 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

V.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174>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icfr.org/sub/menu/data.asp>